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56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7
3.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9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12
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제7조) ...	14
라.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등(안 제8조~제11조)	18
마.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안 제3장: 제12조~제17조) ...	22
바. 국가유산돌봄사업(안 제4장: 제18조~제22조)	27
사.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안 제5장: 제23조~제25조)	34
아. 보칙(안 제6장: 제27조~제29조)	37
자. 과태료(안 제7장: 제30조)	40
차. 부칙(안 부칙 제1조~제5조)	4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9. 17.

다.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화재, 낙서 등의 인위적 재난까지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협하는 훼손 요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있던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문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만 옮겨져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대응·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및 조사 등에 대한 규정도 누락되어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관리시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국가유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국가유산 안전점검,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자.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인 국가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범위 등과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차.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홍보 실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유산 방재의 날,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카.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재난안전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를 위반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최근 기후위기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유산의 보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표 기온은 1912년부터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6개 지점 평균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 0.21℃/10년의 기온 변화율로 뚜렷하게 상승하였고¹⁾, 1973~2023년 우리나라 평균 지표 기온의 상위 10위 해를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한 2020년대의 모든 해가 10위 안에 들어 있음.

[표] 1973~2023년 우리나라 평균 지표 기온의 상위 10위 해

순위	연도	기온(℃)
1	2024	14.5
2	2023	13.7
3	2016	13.4
4	2021	13.3
	2019	13.3
6	1998	13.2
7	2015	13.1
8	2020	13.0
	2007	13.0
	1994	13.0

* 자료: 기상청

1) 기상청,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 :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

-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기상이변이 급증하였음. 2022년 울진 산불, 2025년 강원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등은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전통목조건축물, 명승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재난취약성이 확인되었음. 여기에 문화유산 낙서, 방화, 시설 노후화 등 인위적 요인까지 중첩되어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이 과거보다 복합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의된 본 제정안은 기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을 법률적 차원에서 별도로 정비하려는 것임.
 - 특히, 최근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대응·복구를 위한 안전조치 및 조사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고 보임.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평가(안 제7조),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8조),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안 제10조) 등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한 점은 현행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보존’의 하위개념이므로 「문화유산법」 등 현행법령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수행 중이므로 별도 독립법인을 신설할 실익이 낮고 국가유산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제정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법률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1조의3²⁾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게 위탁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는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인 국가유산돌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기관으로, 국가유산 보존·활용·보급 및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업무 중복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고, 현행 위탁구조는 국가유산돌봄의 역량 강화, 전문성 확보 등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30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총칙부터 벌칙까지 총 7장으로 나누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른 것임.

조문번호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제5조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제7조	국가유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제8조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추진
제10조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장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제12조	국가유산 안전점검
제13조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제1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6조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제17조	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

제4장 국가유산돌봄사업	
제18조	국가유산돌봄사업
제19조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
제20조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제21조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22조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5장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	
제23조	교육훈련·홍보 실시
제2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5조	국가유산 방재의 날
제6장 보칙	
제26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7조	청문
제28조	비용의 지원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제30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돌봄센터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은 법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가유산, 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등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무형유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3.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입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의 핵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현재 국가유산의 재난 대응에 관해서는 「문화유산법」에 일부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주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무형유산을 제외한 모든 국가유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국가유산”, “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재난”, “안전관리”를 정의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임.

- 안 제2조제4호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³⁾에 따른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태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지정 등의 자연재난
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보호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봄.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
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
한 피해

다. 삭제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시적 예방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며, 국민도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국가는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였음.

-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국민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제7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 시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장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 제5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3.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 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5. 국가유산 재난대응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6.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8.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도별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관리 현황
2.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 현황
3. 국가유산 재난 발생 위험도
4.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유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결과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국가유산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목표, 기후변화 대응, 정보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안전 점검,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는 종합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구역 내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시책과 지역 맞춤형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6조는 국가유산청장이 재난 안전관리 시설, 인력, 위험도, 기후변화 영향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와 통계자료를 확보·작성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나 국가유산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재난안전관리의 기초 정보와 통계가 체계적으로 확보되어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유자·관리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7조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재난안전관리시책에 반영하고, 취약한 국가유산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국가유산의 손상·훼손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라.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등(안 제8조~제11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국가유산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제 정 안

제8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수집·제공 및 이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그 수집·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추진)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인력기준 또는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은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을 제도화하여 국가유산 재난 안전관리의 디지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간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실시간 대응 및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9조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0조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 재난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력기준 및 교육·훈련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제정안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국가유산 재난 대응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대응
력의 수준을 보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마.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안 제3장: 제12조~제17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재난대응매뉴얼의 마련,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의 지정,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3장 국가유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제12조(국가유산 안전점검)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난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 및 재난대응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①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난대응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에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관람 등 활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재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과 국가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보수·보강 또는 위험 요소의 제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 피해를 입은 지정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피해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복구비용의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안 제12조는 국가유산청과 시·도지사가 국가유산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3조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국가유산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음.

- 유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소유자와 관리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4조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등이 재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등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유산 현장에서 화재·풍수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물리적 방어체계를 확보하되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자연적 가치 보존과 문화유산 안전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 안 제15조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유산 현장에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인 흡연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지 설치와 행정적 제재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 의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는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관람 제한, 시설 보수·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7조는 재난 피해 발생 시 소유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가유산청장 등에게 보고되며, 국가유산청장이 복구비용 지원 등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 발생 시 신고와 조사, 보고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대응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현황 자료를 향후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문화유산법」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문화유산법」은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함) 방지 시책 수립, 대응매뉴얼 마련, 방지 시설 설치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화재, 풍수해뿐만 아니라 대설, 지진 등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부칙 제5조는 「문화유산법」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바. 국가유산돌봄사업(안 제4장: 제18조~제22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의 상시적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유산돌봄센터 설립·운영·평가, 전문가 교육, 디지털 콘텐츠 수집·개발 등 국가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가유산돌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장 국가유산돌봄사업 제18조(국가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국가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유산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 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5.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가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국가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국가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난 예방 4. 국가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국가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19조에 따른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와 제20조에 따른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를 설립한다.

1.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의 지원
2.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4.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운영
6.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②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국가유

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등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인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예방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여 국가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관람환경 개선과 주변 정비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경미한 수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산 관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국가유산돌봄사업은 현재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 2025년 기준 예산은 194억 8,300만원임.

[표] 문화유산돌봄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20,651	18,476	지방자치단체	● 국가유산 돌봄사업(지자체 보조)
		2,100	민간단체 등	● 국가유산 돌봄지원(민간보조/위탁)
		75	국가유산청	● 돌봄사업 운영비
'24년	18,962	16,886	지방자치단체	● 국가유산 돌봄사업(지자체 보조)
		2,001	민간단체 등	● 국가유산 돌봄지원(민간보조/위탁)
		75	국가유산청	● 돌봄사업 운영비
'25년	19,483	17,349	지방자치단체	● 국가유산 돌봄사업(지자체 보조)
		2,069	민간단체 등	● 국가유산 돌봄지원(민간보조/위탁)
		65	국가유산청	● 돌봄사업 운영비

○ 안 제19조는 국가유산청 산하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를 설립하여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며, 연구·조사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문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가 차원의 돌봄사업 전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조사 및 정보화 기능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대한 교육·평가 지원으로 관리 역량을 균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특히, 현행 「문화유산법」은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4), 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으로 편성하여 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0조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하고, 지정 취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또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봄,

○ 안 제21조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으로 지역 간 성과비교가 가능해져 사업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2조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종사자로 하여금 국가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되,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교육을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돌봄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유산돌봄사업은 현재 「문화유산법」에 따라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수행 중이며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의 주요업무와도 기능이 중복되므로, 필요시 현행 돌봄센터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의 업무범위 확장 및 위탁 근거 조정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음.

-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문화유산법」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의 내용과 사업명을 제외하고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안 부칙 제5조는 제정안 시행과 더불어 「문화유산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사.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안 제5장: 제23조~제25조)

- 제정안은 국가유산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대국민 홍보 실시, 민간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 및 행정·기술 지원, 그리고 국가유산 방재의 날 지정 및 이에 따른 안전점검과 방재훈련 등의 행사 추진을 규정함.

제 정 안

제5장 국가유산 안전문화 진흥

제23조(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유산 방재의 날) ① 국가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23조는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초기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재난대비훈련,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소유자·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국가유산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홍보는 현재 「문화유산법」 제14조에 따라 시행 중이고,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과 행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국가유산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며, 폭넓은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국가유산 관리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중이므로, 포괄적으로 국가유산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직접비용보조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불명확

하고 과도한 재정소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안 제25조는 매년 2월 10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 안전 점검, 방재훈련 등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 2월 10일은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이 발생한 날인데, 전국민이 충격에 빠진 날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25조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의 날은 현재 「문화유산법」 제85조에 따라 ‘문화유산 방재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임.

아. 보칙(안 제6장: 제27조~제29조)

- 제정안은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청문, 비용의 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등 보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장 보칙
제2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26조는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 경찰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7조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국민이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행정절차법」⁵⁾도 인허가 취소, 신분 박탈, 법인 설립

5)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 등 침익적 처분에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9조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국가유산청장의 업무 일부를 국가유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안 제7장: 제30조)

- 제정안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7장 벌칙
제30조(과태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30조는 지정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재도 「문화유산법」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차. 부칙(안 부칙 제1조~제5조)

- 제정안은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부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돌봄센터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 제85조, 제88조제6호,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안 부칙 제1조는 집행 기관에서의 준비 기간, 대국민 인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은 제정안에서 시행령 등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을 위해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존의 「문화유산법」 등 기존 법령 및 기관의 행위들에 대한 법적 경과조치와 돌봄센터 지정의 자동 승계,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1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돌봄사업 등이 현행 「문화유산법」에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시행에 따른 중복 방지 및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부칙 제5조는 기존 「문화유산법」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안 제5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의 시책 수립·시행) 규정으로 중복 문구인 「문화유산법」 제6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중복 내용인 「문화유산법」 제14조의6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삭제하자는 입장임.

[안 부칙 제5조에 따라 삭제되는 「문화유산법」 조항]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주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제 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 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의 처

02)6788-5379